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2호 2017. 1. 2. (월요일)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58호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
- 하동군 규칙 제1159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1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하동군*)... 18
- 하동군 고시 제2016-1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서귀*)... 19
- 하동군 고시 제2016-178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 시행인가 고시... 20
- 하동군 고시 제2016-1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하동군*)... 22
- 하동군 고시 제2016-18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12차)... 23
- 하동군 고시 제2017-1호 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5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1274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7
- 하동군 공고 제2016-1275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39
- 하동군 공고 제2016-1276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46
- 하동군 공고 제2016-1278호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3
- 하동군 공고 제2016-1285호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9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1281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괴목천)... 65
- 하동군 공고 제2016-1282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목골천)... 72
- 하동군 공고 제2016-1283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백련마을천)... 79
- 하동군 공고 제2016-1284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입석천)... 85
- 하동군 공고 제2016-1289호 AI 및 구제역 전염병 예방 기간제 근로자 긴급 채용... 94
- 하동군 공고 제2017-2호 2017년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01

회									
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58호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신청 및 지급기준 등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군수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째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1억 원 이하로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실과소장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참여시켜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안 상정) 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안전과 관련된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등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472 호

제16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하 동 군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하 동 군 공 보

(10) 제 472 호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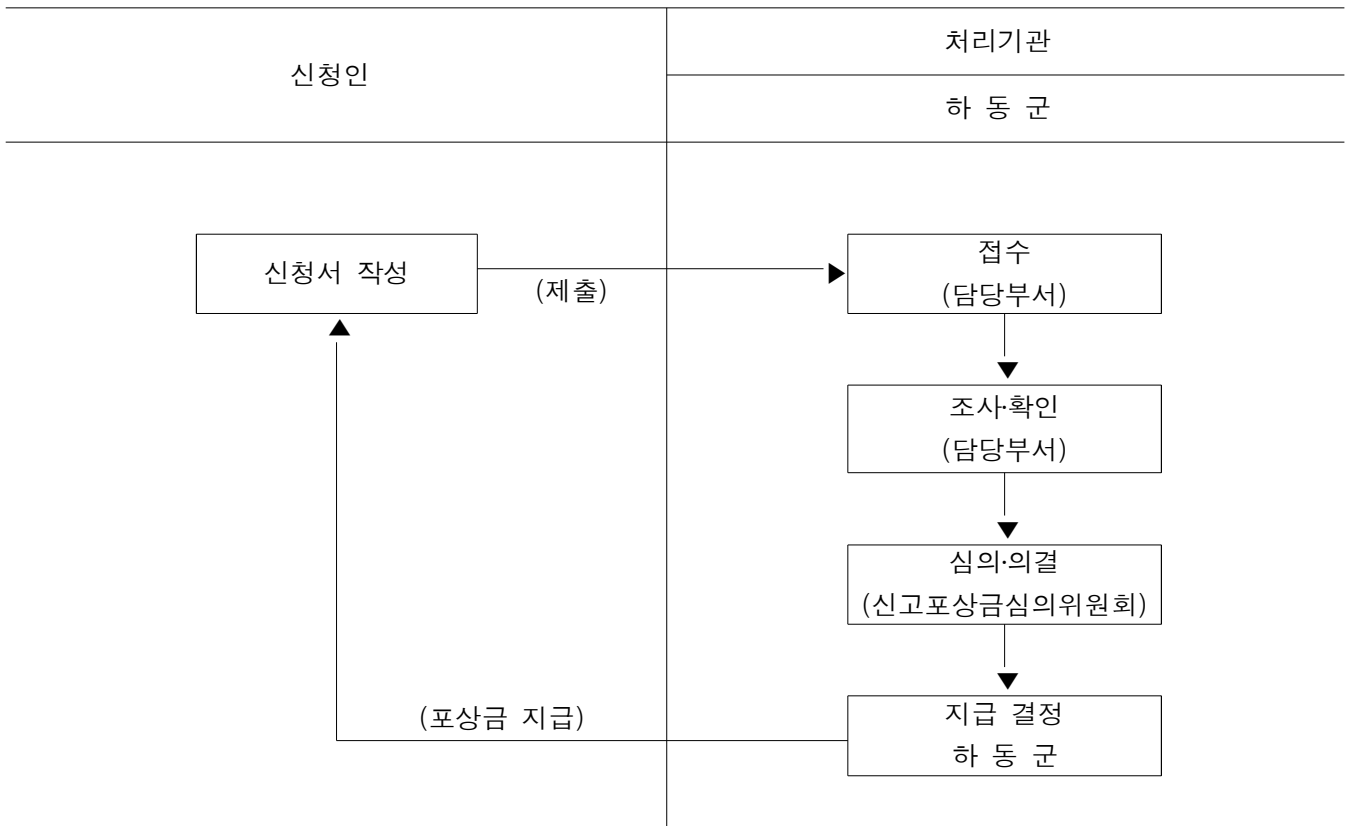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금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 원)	
			(남/여)								

하 동 군 공 보

(12) 제 472 호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남/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남/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 동 군 공 보

(14) 제 472 호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금 결 정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 하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59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472 호

[별표 1] <2015.10.15. 개정>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제3조 관련)

읍면	리	마을	비고(세부지역)
하동읍	흥룡리	먹점마을	
	두곡리	서제마을	
	두곡리	두곡마을	밤골
악양면	미점리	미동마을	
	신흥리	하신흥마을	
	신흥리	상신흥마을	
	매계리	매계마을	
	매계리	노전마을	
적량면	관 리	관동마을	
	관 리	율곡마을	
횡천면	전대리	전대마을	윗전대
	애치리	애치마을	
	애치리	온동마을	
	학 리	개인마을	
고전면	범아리	매자마을	
	성평리	신덕마을	
금남면	대치리	대치마을	진구지
	진정리	금오마을	
	계천리	계항마을	
	덕천리	상삼천 마을	
	덕천리	하삼천 마을	
금성면	궁항리	객길마을	
진교면	고룡리	남양마을	
	송원리	화포마을	
	양포리	양일(발꾸미) 마을	
	안심리	안심 마을	
양보면	장암리	우성마을	
	지례리	가락마을	
청암면	중이리	심답마을	
옥종면	월횡리	고암마을	윗고암
	병천리	가덕마을	산성
	법대리	법대마을	외골
	대곡리	동곡마을	
	대곡리	한계마을	
	회신리	양지마을	내회신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이상으로서 주변마을, 도로, 주민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1(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별표1(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계	31	계	35
하동 흥룡리	먹점	하동 흥룡리	먹점
하동 두곡리	서제	하동 두곡리	서제
하동 두곡리	두곡(밤골)	하동 두곡리	두곡(밤골)
악양 미점리	미동	악양 미점리	미동
악양 신흥리	하신흥	악양 신흥리	하신흥
악양 신흥리	상신흥	악양 신흥리	상신흥
악양 매계리	매계	악양 매계리	매계
악양 매계리	노전	악양 매계리	노전
적량 관 리	관동	적량 관 리	관동
적량 관 리	율곡	적량 관 리	율곡
횡처 전대리	전대(윗전대)	횡처 전대리	전대(윗전대)
횡천 애치리	애치	횡천 애치리	애치
횡천 애치리	온동	횡천 애치리	온동
횡천 학 리	개인	횡천 학 리	개인
고전 범아리	매자	고전 범아리	매자
고전 성평리	신덕	고전 성평리	신덕
금남 대치리	대치(진구지)	금남 대치리	대치(진구지)
금남 진정리	금오	금남 진정리	금오
		금남 덕천리	상삼천
		금남 덕천리	하삼천
금남 계천리	계항	금남 계천리	계항
금성 궁항리	객길	금성 궁항리	객길
진교 고통리	남양	진교 고통리	남양
		진교 양포리	양일(발꾸미)
		진교 안심리	안심
진교 송원리	화포	진교 송원리	화포
양보 장암리	우성	양보 장암리	우성
양보 지례리	가락	양보 지례리	가락
청암 중이리	심답	청암 중이리	심답
옥종 월횡리	고암(윗고암)	옥종 월횡리	고암(윗고암)
옥종 병천리	가덕(산성)	옥종 병천리	가덕(산성)
옥종 법대리	법대(외골)	옥종 법대리	법대(외골)
옥종 대곡리	동곡	옥종 대곡리	동곡
옥종 대곡리	한계	옥종 대곡리	한계
옥종 회신리	양지(내회신)	옥종 회신리	양지(내회신)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로서 주변마을, 도로, 주민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472 호

하동군 고시 제2016-176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고시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하동군수(건설교통과장)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55-880-2548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장소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943(천), 인근지번: 등촌리 932(답)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80.0m²

(또는

m³)

목적

덕기마을 교량 재가설

기간

2017. 01. 01. ~ 영구점용

점용 · 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 2016-17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서귀상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68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52(구) 인근지번 : 덕은리 140(답)		
	면적	54㎡		
	기간	2016. 6. 16. ~ 2021. 6. 15.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동군 고시 제 2016-178 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일

하 동 군 수

-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전작재배)
- 2. 사업내용 및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m ²)	개간면적 (m ²)	사업용도	비고
면	리						
계		1			4,800		
옥중	궁항	산141-1	임	71,461	4,800	전작재배	

- 3. 사업비 : 금28,400천원
- 4. 사업예정기간 : 2016. 12. 28. ~ 2017. 12. 30.
- 5. 사업의 효과 : 개간사업을 통하여 전작재배로 농가소득증대
- 6. 사업시행자 : 하동군 옥중면 옥중중앙길 52-3 권현수

입 간 판

하동군 허가 제2016- 호

- 1. 위 치 : 하동군
- 2.사 업 명 : 농업기반정비(개간)사업
- 3.면 적 : 4,800m²
- 4.사 업 비 : 28,400천원
- 5.공사기간 : 2016. 12. 28. ~ 2017. 12. 30.
- 6.허가일자 : 2016. 12. .
- 7.피허가자 :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52-3
권 현 수
- 8, 허가권자 : 하 동 군 수

	0.5m	(0.9×0.9)
	0.7m	

하 동 군 공 보

(22) 제 472 호

하동군 고시 제2016-179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고시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하동군수(건설교통과장)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55-880-2548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장소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812(구), 인근지번: 미점리 695-1(임)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56.0m²

(또는

m³)

목적

기간

2017. 01. 01. ~ 영구점용

점용 · 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6 - 18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12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9.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73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2.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72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08-4, 108-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67	20161229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858, 859-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253-13	20161229	20070618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면 묵계리로 넘어가는 회남재라는 고개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106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63-8	20161229	2007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84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촌길 89-4	20161229	20070618	거문고형의 뒷산을 끼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06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73	20161229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63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8-28	20161229	2008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7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90-37	20161229	20080402	도로변에 재첩마을이 분포하여 있어 지역적 특색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39-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450	20161229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7-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36	20161229	20090302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인촌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160, 1160-1, 1161, 116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212-29	20161229	2009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598-1, 산6-1, 599, 60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56-1	20161229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13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86	20161229	2009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7-1호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일

하동군수

I.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⑥ 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중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 ① 용어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사·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6 - 1274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제안 이유
 - 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
 - 나. 같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동군 보육 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및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단일조례 제정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반영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 종사자 → 직원

하 동 군 공 보

(28) 제 472 호

- 나.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 바.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318, FAX 880-2159, e-mail: sunny326@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별표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9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과 소재지) 군수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및 위탁기간) ① 군수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제19조(임면)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며,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어린이집을 폐지·매각하거나 군 직영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3.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20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보수 및 퇴직금)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22조(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린이집에 보조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3.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그 밖에 영유아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

제25조(지도·명령)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동군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 조례」,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38) 제 472 호

[별표1]

하동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제13조 관련)

명칭	소재지
하동어린이집	경남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3
하동꿈나무어린이집	경남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0

하동군 공고 제2016-1275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2. 제안 이유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발행된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근거를 마련하고,
- 하동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및 소비 확대를 하려면 할인판매가 필요함에도 보상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 상품권 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행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사용자 준수사항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상품권 활성화 시책(안 제12조)
- 예산지원 및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 전화 880-2192, FAX 880-2199, emperor6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대행점”이라 함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라 함은 상품권을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명칭, 종류, 액면 가액 및 발행 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하동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행점을 지정할 경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하동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 사용 제한 등) ① 예산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그 사용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44) 제 472 호

⑤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1조(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포상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판매
2.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3. 판매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할인판매 등) ① 상품권 할인판매, 경품지급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군수가 정한다.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대행점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보안장치)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행된 하동사랑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하동사랑상품권으로 보며, 대행점 및 가맹점 또한 이 조례에 따라 계약 및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하동군 공고 제2016-1276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 제안 이유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설개선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제1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 전화 880-2192, FAX 880-2199, emperor6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부.

(48) 제 472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利差補填)”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증채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채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업체와 대출 간의 약정금리 중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대상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하는 업종

제10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군수는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재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동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52) 제 472 호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1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의 예산지원 및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지원 및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보조금 또는 융자금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등)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창업,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대출금 이차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사후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계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6-1278호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 전화 880-2192, FAX 880-2199, emperor6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하동사랑 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폐기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3.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등 특례 지원
6.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촉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 동 군 공 보

(58) 제 472 호

[별지 제1호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055) - (010)
	주 소	도로명주소기재	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u>가격인하</u> 여부 (품목/인하 일자)	- 20 년(' 년 월)		
	가격동결(동결 기간)	- ' 년 월 ~ 현재		
	최근 6개월 내 <u>가격인상</u> (품목/인상 일자)	- 20 년(' 년 월)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	시책 명, 실적		
	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	종사자 친절도	상, 중, 하 / 설명		
	영업장 청결도	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청소년 할인() / 특정시간대 할인()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시장, 도지사, 장관()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p>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추천인) : (인)</p> <p>하동군수 귀하</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 공고 제2016-1285호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관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종합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행복과, 전화 880-2346, FAX 880-2349, e-mail phj1425@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별지서식 포함)

(60) 제 472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하동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6 - 1281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괴목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괴목천	괴 목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385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47-1	0.64	0.64	횡단 배수 암거 (3.0*1.5) 8개소 등	2017. 1.	2017. 12.	소하천 정비	부대공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괴목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괴목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1385 ~ 우계리1547-1 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64km, 횡단배수암거 (3.0*1.5) 8개소 등
 - 사 업 비 : 1,021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1385 ~ 우계리1547-1 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1.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7년	비고
1,021	1,021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7년 1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5)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SCALE = 1 : 50,000



하 동 군 공 보

(69) 제 472 호

< 괴목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적량	우계	2211	구	160223	3654	국(국토교통부)	
2	하동	적량	우계	2254	도	1673	367	국(국토교통부)	
3	하동	적량	우계	1547	답	202	202	한국농어촌공사	
4	하동	적량	우계	1547-1	답	1137	1137	한국농어촌공사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적량	우계	1385	답	410	272	김명식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6길16, 202동 1005호
2	하동	적량	우계	1384	답	688	32	김경보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4
3	하동	적량	우계	1460	답	364	159	김명식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6길16, 202동 1005호
4	하동	적량	우계	1461	답	1623	181	김경수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85
5	하동	적량	우계	1467	답	1775	378	김경수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85
6	하동	적량	우계	1465-1	답	3441	4	김민식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81
7	하동	적량	우계	1468	답	450	120	김민식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81
8	하동	적량	우계	1469	답	1603	23	김민식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81
9	하동	적량	우계	1440	답	112	112	김명식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6길16, 202동 1005호
10	하동	적량	우계	1438	답	212	212	김순영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7
11	하동	적량	우계	1470	임	23	23	김석주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2011
12	하동	적량	우계	1471	천	20	20	조임백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994
13	하동	적량	우계	1472	답	2218	27	김민식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81
14	하동	적량	우계	1437	답	645	53	김순영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7
15	하동	적량	우계	1473	답	1273	218	김희식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77-6
16	하동	적량	우계	1474	답	139	139	박한옥	부산시 북구 명지동 진목 608
17	하동	적량	우계	1476	답	1207	292	김명식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6길 16, 202동 1005호
18	하동	적량	우계	1477-1	답	1111	25	김순영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7
19	하동	적량	우계	1553	답	526	345	김순영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78-4
20	하동	적량	우계	1552	답	179	179	정태호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4
21	하동	적량	우계	1549-1	답	899	87	정태호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4
22	하동	적량	우계	1551-3	답	1058	93	김순영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78-4
23	하동	적량	우계	1550	답	43	43	최선오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984

하 동 군 공 보

(70) 제 472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4	하동	적량	우계	1549-2	답	691	67	김순영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7
25	하동	적량	우계	1477-3	답	1907	95	이정수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529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괴목천 정비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6 - 1282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목골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목골천	목 골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676-2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59-9	0.245	0.245	횡단 배수 암거 (3.0*2.0) 1개소	2017. 1.	2017. 12.	소하천 정비	부대공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목골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목골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676-2 ~ 읍내리 559-9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245km, 암거 1개소 등
 - 사 업 비 : 372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676-2 ~ 읍내리 559-9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1.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하 동 군 공 보

(74) 제 472 호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7년	비고
372	372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7년 1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5)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SCALE = 1 : 50,000



하 동 군 공 보

(76) 제 472 호

< 목골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읍	리					성 명	주소
1	하동	하동	읍내	676-39	구	32	32	하동군	
2	하동	하동	읍내	676-24	임	69	29	국(기획재정부)	
3	하동	하동	읍내	676-25	임	39	39	국(기획재정부)	
4	하동	하동	읍내	676-43	구	11	11	국(기획재정부)	
5	하동	하동	읍내	676-40	구	5	5	하동군	
6	하동	하동	읍내	676-26	임	60	35	국(기획재정부)	
7	하동	하동	읍내	676-41	구	54	54	하동군	
8	하동	하동	읍내	676-29	임	50	12	국(기획재정부)	
9	하동	하동	읍내	560-16	구	53	53	하동군	
10	하동	하동	읍내	1547-2	구	13177	1091	국(국토교통부)	
11	하동	하동	읍내	560-17	구	87	87	하동군	
12	하동	하동	읍내	561-2	구	82	82	하동군	
13	하동	하동	읍내	560-18	종	8	8	하동군	
14	하동	하동	읍내	559-6	답	211	211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77) 제 472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읍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하동	읍내	676-2	답	2249	22	유수용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24
2	하동	하동	읍내	676-3	답	960	181	김재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21-92
3	하동	하동	읍내	560-1	답	1404	176	김주환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34-8
4	하동	하동	읍내	561	답	1073	158	(주)청솔종합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69-20
5	하동	하동	읍내	560-2	답	2803	65	김주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63
6	하동	하동	읍내	562	답	2663	73	(주)청솔종합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69-20
7	하동	하동	읍내	559	답	1602	14	(주)청솔종합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69-20
8	하동	하동	읍내	560-3	종	457	131	조영주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월매재길 29
9	하동	하동	읍내	41-4	답	431	13	(주)효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 2길 10 ,3층
10	하동	하동	읍내	559-7	답	511	52	(주)청솔종합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69-20
11	하동	하동	읍내	559-9	답	8	8	(주)청솔종합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69-20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목골천 정비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6.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6 - 1283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백련마을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백련마을천	백련마을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83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25-4	0.332	0.332	횡단 배수 암거 (5.0*2.7) 1개소	2017. 1.	2017. 12.	소하천 정비	부대공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83 ~ 백련리 325-4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332km, 횡단배수암거 1개소 등
 - 사 업 비 : 412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83 ~ 백련리 325-4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1.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7년	비고
412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7년 1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5)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SCALE = 1 : 50,000



<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진교	백련	783	도	1528	19	국토교통부	
2	하동	진교	백련	765-20	구	10866	1266	건설교통부	
3	하동	진교	백련	778	도	2383	16	국토교통부	
4	하동	진교	백련	365-1	도	572	1	국토교통부	
5	하동	진교	백련	321-5	수	439	32	국토교통부	
6	하동	진교	백련	362-6	수	5	3	국토교통부	
7	하동	진교	백련	365-19	답	5	5	하동군	
8	하동	진교	백련	325-1	도	10	10	하동군	
9	하동	진교	백련	325-4	제	6	6	하동군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진교	백련	362-1	도	7	2	고경오	
2	하동	진교	백련	362-3	전	243	39	김정례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62
3	하동	진교	백련	362-2	답	218	2	김정례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40-1 옥상그린아파트 809호
4	하동	진교	백련	366	답	436	74	김승철	김해시 외동 833 일동한신아파트 117동 1001호
5	하동	진교	백련	321-1	답	2608	363	김명자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581-1
6	하동	진교	백련	321-2	답	2888	271	장동만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74-3
7	하동	진교	백련	321-3	답	1986	178.5	조순철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312
8	하동	진교	백련	321-4	답	3496	271	금영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 성원@ 511-1601
9	하동	진교	백련	365-8	도	218	15	고종원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64
10	하동	진교	백련	325-3	잡	490	82	차윤진 외3명	창원시 대원동40-1 새경남아파트6동 310호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6 - 1284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입석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입석천	입석천정비사업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00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61-8	0.73	0.73	BOX (5.0*2.4) 1 개소, BOX (4.5*2.0) 1 개소,	2017. 1.	2017 12.	소하천정비	부대공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입석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입석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00 ~ 입석리 161-8 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73km, BOX 2개소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00 ~ 입석리 161-8 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1.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7년	비고
2,000	2,000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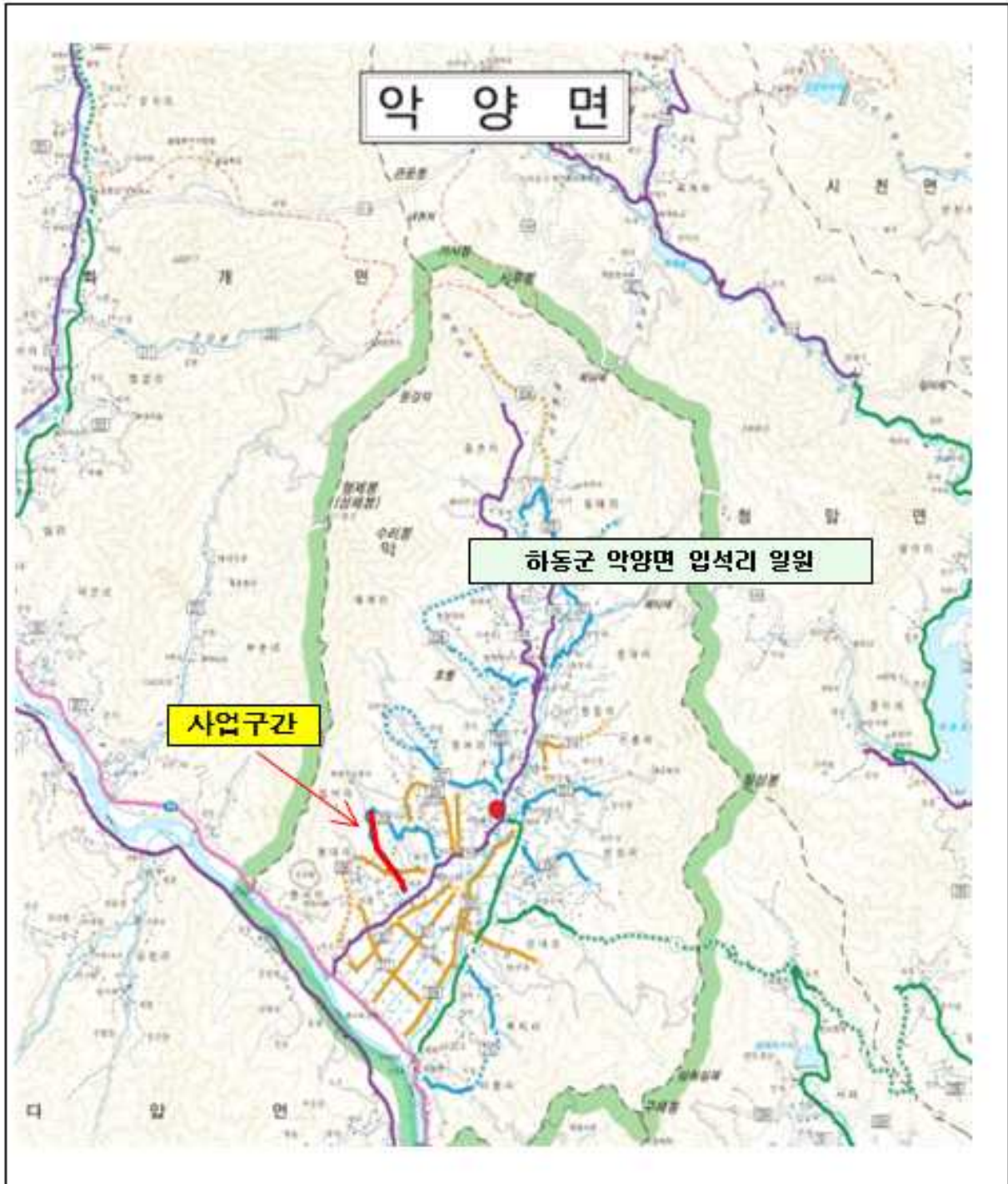
- 보상시기 : 2017년 1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5)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SCALE = 1 : 50,000



< 입석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1	하동	악양	입석	944	도	1127	6	국(국토교통부)	
2	하동	악양	입석	939-8	천	7117	3341	국(국토교통부)	
3	하동	악양	입석	946	도	5437	163	국(국토교통부)	
4	하동	악양	입석	945	도	321	78	국(국토교통부)	
5	하동	악양	입석	940-6	도	346	219	국(국토교통부)	
6	하동	악양	입석	948	도	417	9	국(국토교통부)	
7	하동	악양	입석	151-2	도	417	30	경상남도	
8	하동	악양	입석	174-1	도	96	4	국(국토교통부)	
9	하동	악양	입석	166	구	15541	4414	국(농림축산식품 부)	
10	하동	악양	입석	240-3	도	46	6	하 동 군	
11	하동	악양	입석	151-7	도	52	52	하 동 군	

하 동 군 공 보

(90) 제 472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악양	입석	500	답	321	20	강기성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10-2
2	하동	악양	입석	499	답	1071	257	강정욱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14번길27, 107동 1903호
3	하동	악양	입석	544-6	답	2089	9	김점이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46-1
4	하동	악양	입석	544-10	답	223	4	강기성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40-16
5	하동	악양	입석	산9	임	3471	15	강기팔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88
6	하동	악양	입석	544-2	답	1311	88	강기성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40-16
7	하동	악양	입석	550	대	588	40	강병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88
8	하동	악양	입석	300-4	도	71	15	강철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88
9	하동	악양	입석	549-2	답	1428	14	강희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78,2010동701호
10	하동	악양	입석	551-1	대	752	46	강희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6 그린빌 아파트 1514동 606호
11	하동	악양	입석	551-2	대	348	52	강희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78,2010동701호
12	하동	악양	입석	300-1	답	2689	622	강춘수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 328,419동604호
13	하동	악양	입석	300-2	답	3686	81	박점식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551
14	하동	악양	입석	210-2	답	261	17	박점식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551
15	하동	악양	입석	209-1	답	2253	7	김소식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603
16	하동	악양	입석	211	답	251	2	진성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6 더샵 센텀스타아파트 씨동 3401호
17	하동	악양	입석	300-3	답	1478	456	주심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2-9
18	하동	악양	입석	212	답	1544	77	진성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6 더샵 센텀스타아파트 씨동 3401호
19	하동	악양	입석	214	답	364	86	주심희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16
20	하동	악양	입석	213-5	답	877	15	주심희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16
21	하동	악양	입석	213-3	답	1127	119	제평권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858

하 동 군 공 보

(91) 제 472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2	하동	악양	입석	219	답	783	2	제 평 권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85
23	하동	악양	입석	218	답	3663	316	이 차 수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561
24	하동	악양	입석	217	답	23	23	이 차 수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561
25	하동	악양	입석	255-2	답	2651	73	정재식외 인	양산시 양주로 16, 106동 1602
26	하동	악양	입석	243	답	2118	259	최 달 엽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50-11
27	하동	악양	입석	235	답	228	123	노 인 순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99-1 신대연코오롱하늘채아 파트 107-601
28	하동	악양	입석	236	답	2628	59	신 은 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14동 701호
29	하동	악양	입석	237-1	답	1217	294	신 은 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14동 701호
30	하동	악양	입석	237-2	답	883	12	강 청 길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10
31	하동	악양	입석	239	답	3448	240	우 선 옥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59-1
32	하동	악양	입석	242-1	답	2127	81	박 진 하	부산 동래구 연산동 1481-38
33	하동	악양	입석	241	답	268	237	우 선 옥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5-5
34	하동	악양	입석	151-1	답	252	252	우 선 옥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5-5
35	하동	악양	입석	240-1	답	2831	238	이 수 호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96-1
36	하동	악양	입석	159-3	답	1344	16	정 병 숙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96
37	하동	악양	입석	159-4	답	1494	22	김 복 순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68
38	하동	악양	입석	159-5	답	329	6	김 복 순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68
39	하동	악양	입석	159-6	답	2141	32	이 종 선	하동군 하동읍 흥흥리 1761
40	하동	악양	입석	159-7	답	2488	27	이 춘 길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98-1
41	하동	악양	입석	160-2	답	2096	8	강 동 선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56
42	하동	악양	입석	160-3	답	1384	9	강 철 길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3

하 동 군 공 보

(92) 제 472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43	하동	악양	입석	160-4	답	1268	11	최영란외1 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892 벽산삼협한솔아파트 103동 1901호
44	하동	악양	입석	159-9	답	2481	12	이 춘 길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98-1
45	하동	악양	입석	159-1 1	답	1000	2	이 종 선	하동군 하동읍 흥흥리 1761
46	하동	악양	입석	160-5	답	2541	33	최 정 조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65괴정3차자유아파트 605호
47	하동	악양	입석	160-6	답	2516	59	이 재 영	서울특별시구로구 신도림동 642신도림대림아파트 407-1902
48	하동	악양	입석	160-7	답	2468	72	김 형 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2-2
49	하동	악양	입석	159-1 4	답	2289	8	오 판 식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332-4
50	하동	악양	입석	158-1	답	1405	3	김 순 세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77
51	하동	악양	입석	158-2	답	1047	3	강 정 식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43
52	하동	악양	입석	158-3	답	2574	14	이 병 문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625
53	하동	악양	입석	158-4	답	2505	21	류 강 용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37
54	하동	악양	입석	158-5	답	1874	22	최 달 엽	하동군악양면 입석길 50-11
55	하동	악양	입석	157-1	답	1373	21	강 정 식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43
56	하동	악양	입석	157-2	답	1628	25	강 정 식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43
57	하동	악양	입석	157-3	답	2579	44	강 정 식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43
58	하동	악양	입석	160-8	답	2213	70	강 연 태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604-1
59	하동	악양	입석	161-1	답	2440	69	조 옥 연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610
60	하동	악양	입석	161-2	답	1268	39	최 달 엽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50-11
61	하동	악양	입석	161-3	답	1214	35	박 인 원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0
62	하동	악양	입석	161-4	답	1283	39	강 연 태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604-1
63	하동	악양	입석	161-5	답	1189	37	강 태 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585
64	하동	악양	입석	161-6	답	2534	67	장 주 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500시지대성유니드 105-202
65	하동	악양	입석	161-7	답	2756	84	이 수 훈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515
66	하동	악양	입석	161-8	답	2571	83	이 수 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69번길 59, 16동 1104호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사생골천 정비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6.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6-1289호

구제역 예방업무 근로자 공고(안)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구제역 예방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 월 일

하동군수

1. 채용기준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9조의2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근무처	비고
AI 및 구제역 예방업무 근로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 구제역 방역소독 업무 ◦ 유기견 신고처리 보조 ◦ 기타 가축위생 당면업무 처리 보조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3. 응시자격

가. 접수일 현재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있지 아니하며 상시근무자 가능한자(겸직불가)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라. 자격요건 : 각 호의 하나이상 해당되는 자

1)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2) 업무 내용과 관련 신체적 결함이 없을 것

3) 2016. 12. 28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서류전형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채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면접 별도 실시

4.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근 무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다. 계약기간 : 2017. 1월 ~ 2017. 11월(예정)

라. 보 수 : 하동군수가 정한 금액

※ 임금 62,800원(2017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마. 근로시간 : 주5일/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채용방법

- 제1차 심사 : 서류심사
- 제2차 심사 : 면접시험

나. 채용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01. 3(월) - 전화통보
- 면접 일시 : 2016. 01. 4(화) - 농업기술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01. 4(수) - 전화통보

※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원서접수 일정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비고
2016.12.29 09:00 ~ 2017.1.2 18:00	2017.1.3(화) [개별통보]	2017.1.4(수)	2017.1.4(수) [개별통보]	

○ 원서 접수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 담당

※ 원서접수방법 : 방문접수이며 토, 일요일은 접수 가능.

7.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 나. 이 력 서 1부.
- 다. 자기소개서 1부.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2매 이내)
- 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초본의 경우 주소이력 전체 발급 제출
- 마.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880-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 접수번호:

지원분야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향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성 별	
		현재주소	(우:) 하동군			
		거주지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e-Mail	복무기간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대폰			

학 력 사 향	학교명	재학기간(최종학력)	전공	수학구분	비고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향	직장명	근무기간(최근5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 어 학	자 격			어 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이 력 서

구분	응시 분야
내용	지역특화 농업정보화

	성 명	(한문)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양력)	
	주 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E-MAIL		
	핸 드 폰	결혼유무	미혼/ 기혼	
	가족사항	남 녀 중	주거사항	동거/비 동거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소재지
					졸업/재학	
					졸업/재학/휴학	
					졸업/재학/휴학	

경 력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비 고
	. . ~ .				
	. . ~ .				
	. . ~ .				

신 체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병 역	구분	병과	계급	소속부대
	cm	kg	좌: 우:	형		필 / 면제			
						복무기간	년 월 ~ 년 월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령	근무처	직위	동거	외 국 어	언 어	능 력
								영 어	상 중 하
								공인시험	점 수

O A 능 력		상 중 하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종 류	등급
		상 중 하		. .		
		상 중 하		. .		
		상 중 하		. .		

자 기 소 개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작성

하동군 공고 제2017-2호

-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하동군 산단조성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① 채용분야

분 야	채용인원	근 무 처	업무내용	비고
기간제근로자 (테마로드시설물관리)	1명	산단조성과 (산단기획부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시설물 관리	

② 응시자격

- 응시연령 및 지역조건 : 만 18세 이상(2017. 1. 1.현재)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근 가능자(겸직 불가)

③ 임금 및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채용기간 : 2017. 2. 1.(수) ~ 예산소진시까지
- 근로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 임 금
 - 62,000원/일(2017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주차·연차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④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면접은 서류전형 접수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실시

⑤ 공고 및 서류접수

- 기 간 : 2017. 1. 2(월) ~ 2017. 1. 6(금) 18:00까지
- 접 수 처 : 하동군청 산단조성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하동군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1부 [붙임 1]
 - 이력서 1부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 주민등록등본 1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3.5cm×4.5cm)

⑥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7. 1. 13(금)
- 면접시험 : 2017. 1. 19(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채용예정인원 초과 시 실시)
 - ※ 면접시간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 26(목) - 합격자 개별통보

⑦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및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청 산단조성과 산단기획부서 (☎055-880-2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섬진강 100리테마로드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동군수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 교	년	졸업·수료·재학									
소지자격증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합판 (3.5×4.5cm)		
응시분야							근무희망부서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번 호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합판 (3.5×4.5cm)		
응시분야							근무희망부서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번 호															

[붙임 1]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라.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마. 응시구분 : 공개모집 직종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직접 기재합니다.
 - 바. 근무희망부서 : 본인이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부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 사. 생년월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17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 차.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